

2022년도 제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2. 16.(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30건(안건번호 제2022-5219호~591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5219호(순번 1번)는 블로그 및 이메일을 통하여 대중가요의 MR 음원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대심제가 아닌 심의위원회 심의의 특성상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5220호~5224호(순번 2번~6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내지 무력화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등'을 제공 중인 바 시정권고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5225호, 5226호(순번 7번~8번)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게시물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5227호~5230호(순번 9번~12번)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암호화하여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되어 가결함. 다만, 제2022-5227호~5229호(순번 9번~11번)는 현재 저작권 침해 상태가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2-5231호(순번 13번)는 블로그에서 방송물 전편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의 사정은 인정되나 권리자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여 전송 중단이 이루어진 바, 시정권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2-5232호~5269호(순번 14번~51번)는 웹사이트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688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915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2022-2486호~4400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6개에 접속할 수 있는 1,915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6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83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이용자가 “☒☒☒☒☒☒☒☒☒☒”이라는 제목으로 대중가요 ‘△△△△△’의 MR 음원을 2만 원에 판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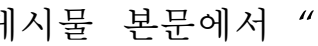
있는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글은 MR 음원을 소개하는 내용과 게시자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MR 음원 샘플본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해당 음원의 MR 음원은 ▷▷,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음원들은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MR 음원과는 상이함.

먼저, 침해되는 저작권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음. 심의대상 MR 음원은 원저작물 중 가수의 가창 부분을 삭제하는 정도의 편집을 거쳐 제작된 바, 이를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다만, 적어도 원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 사실에 대하여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사안의 경우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과 같은 직접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한바,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를 통한 '전송' 사실의 인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에게 반복하여 동일 저작물을 발송하는 행위가 불법복제물의 전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의 해석에 따르면 공중에게 저작물을 이용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전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메일로 특정한 개인에게 저작물을 발송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저작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및 민원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게시자가 게시물 본문에서 “”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신의 연락처 및 이메일을 제시하고 있는 점, 게시물 하단 블로그 배너에 “○○○○○○○○”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2022. 2. 11. 기준 “□□□□□□□□” 등 구매 문의 댓글이 195건 달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게시자는 직접 편집한 MR 음원을 이메일을 통해 다수에게 발송 중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게시자가 원저작물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음으로, 권리자의 이용허락 여부 부분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는 MR 제작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이 제작한 MR을 ‘◁◁◁◁◁◁’ 항목에, ‘▯▯▯▯’이라는 업체가 ‘◇◇◇◇◇◇◇◇◇◇’ 명의로 제작한 MR을 ‘■ ■ ■ ■ ■ ■ ■ ■ ■ ■’ 항목에 게시하고 있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한 결과, ○○○○은 협회로부터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임이 확인됨.

게시자가 제작하여 판매 중인 MR이 전부 해당 업체에서 판매 중인 점, 해당 업체 역시 축가용 MR 제작, 결혼식 영상 제작 등 게시자와 동종의 분야에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점, △△△에서 ‘☆☆☆☆’를 제공하는 수십 개의 채널 중 ‘▶▶▶▶▶▶’의 노래방 반주만을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 다수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게시자가 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로서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해당 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동일한 형태의 사안에 대하여, 2021. 4. 1. 개최 제2021-63회 전체위원회에서는 게시자가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대심제가 아닌 심의위원회 심의의 특성상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음.

종합하면, 게시자가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의위원회 심의가 대심제가 아닌 관계로 당사자 의견 청취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우리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판단 기준에 따라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6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이용자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파일 내지 방법을 각각 제공하고 있음. 총 5개 게시물임.

해당 저작물은 별도의 제약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나, 7일의 무료 이용 기간이 도과하면 유료 라이선스 구입 후 라이선스 정보를 기입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권리자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프로그램 자체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 사용 약관, 저작권 안내 등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인 프로그램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고 있음.

(순번 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

의 링크의 경우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프로그램, 일명 '크랙 버전 프로그램'을 제공 중임.

(순번 2번, 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일명 '크랙'을 제공 중임.

(순번 3번, 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를 무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심의위원회는 원천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원천 게시물에 대하여,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하고 있음. 사안의 링크게시물의 경우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바, 링크게시물인 심의대상 게시물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종합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불법복제물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을 이용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검토보고서 14 페이지에 원천게시물이 링크된 웹 사이트 IP 주소가 조사되어있음. IP 주소가 추적 가능한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운영자가 IP 우회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주어진 URL 정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와 같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등'을 제공 중에 있으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C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6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번~8번은 2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블로그 이용자가 블로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크랙 버전의 토렌트 마그넷 주소 파일 내지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사안임. 총 2개 게시물임. 보호원은 해당 파일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실제로 다운로드 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순번 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앞선 순번과 동일하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이며, 해당 저작물은 권리자 홈페이지에서 기간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며, 라이선스 이용료는 월 24,000원임.
먼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음.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권 침해 유형으로서 '배포', '복제', '공중송

신' 등을 정하고 있음.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의 이름, 크기, 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메타데이터는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저작물을 찾아내는 색인의 역할을 함. 토렌트 파일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후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통하여 토렌트 파일을 열고 트래커 서버에 접속하여 현재 공유된 저작물의 피어와 시더(이하 '피어 등'이라 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온 뒤 해당 정보에 근거하여 피어 등으로부터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함. 따라서 토렌트 파일에는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정보만이 존재할 뿐 저작물의 원본이나 내용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피어 등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저작물을 삭제한 경우 등에는 다운로드할 수 없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토렌트 파일의 제공만으로 저작물 파일, 즉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복제권 침해의 방조에 대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방조행위에 있어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이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러한 법리는 전송권의 침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게시자는 이용자들이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복제물을 전송받아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음으로, 시정권고 대상성 판단 여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을 직접 복제·전송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이 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 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렌트 파일의 전송은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의 방조행위임이 인정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파일을 전송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종합하면, 순번 7번~8번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게시물로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게시물이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번~8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번~12번은 2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다수의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 링크를 암호 형태로 게시한 사안임. 총 4개 게시물임.

(순번 9번의 ◆◆◆◆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암호화된 링크 및 게시물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웹사이트로 이동하여)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암호를 해당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 항목에 ■■■■■■■■■ 주소가 현출됨. (▽▽▽▽▽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불법 복제된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음.

(순번 12번 심의대상 게시물 및 ‘♣♣♣♣♣♣’ 웹사이트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순번 12번의 경우 ‘●●●●●’의 ■■■■■■■■■ 주소를 통해 불법복제물이 아닌 ‘♡♡♡♡’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로 연결됨. 해당 텍스트 파일은 안건으로 상정된 저작물을 비롯하여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는 암호를 제공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암호화된 불법복제물 링크들의 총집본의 역할을 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임.

이와 같은 형태의 불법복제물 전송은 해당 갤러리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이용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 및 동일 게시자에 대한 기존의 시정권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각 게시자는 ★★★★★에 불법복제물을 직접 업로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따라서 앞선 순번과 동일하게 심의대상 게시물의 불법복제물 제공 행위를 저작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게시자는 오로지 불법복제물을 전송할 목적으로 암호화된 링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기존 링크 사안과는 달리 암호를 해독하는 추가적인 단계가 요구되나, 암호화된 링크를 제공하는 자와 해당 링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불법복제물의 게시자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불법복제물 전송에 따른 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암호 형태로 링크를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모든 절차는 불법복제물 전송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특별히 기존의 링크 사안과 달리 불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암호화된 링크 제공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사안의 경우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바, 링크를 제공 중인 심의대상 게시물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동일한 형태의 사안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하였음.

다만, 순번 9번~11번은 2022. 2. 14. 현재 삭제되어 현존하지 않음. 종합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자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로서 암호화된 링크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순번 9번~11번은 현재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게시자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영리 목적이 없는 게시물로 보임.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의 특성상, 동일한 취향 또는 취미를 가진 자들과 자신이 가진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유명세를 얻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게시자는 직접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편집한 영상을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해당 드라이브 주소를 암호화하여 공유하고 있음.
- B 위원: 암호화된 링크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9번~11번은 현재는 저작권 침해 상태가 모두 해소되어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C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9번~11번은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순번 12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3번은 블로그 이용자가 방송 '■■■■■■' △△~△△△ 전편의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24개 게시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2022. 2. 14. 기준 저작권법 제103조에 근거한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전송 중단이 된 상태임. 시정권고 제도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자율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103조와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바, 하나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3조에 근거한 권리 구제 및 제133조의3에 근거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이 경우 시정권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제103조에 따른 권리자의 권리 행사에 따라 시정권고의 '전송 중단 및 경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지닌 '전송 중단 및 중단 내역 통지'가 이루어진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도 시정권고와 동일하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여 향후 접근제한 등 자체적인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호원의 추가적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부결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종합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과거 심의위원회 합치된 판단 기준에 따라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결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번은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4번~51번은 11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 등 웹사이트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각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107개 게시물임.

(순번 1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순번 14번은 ♣♣♣♣ 이용자가 방송 ‘○○○○’ ○○ 전체 분량의 영상 부분만을 전송 중인 사안으로, 게시자는 해당 방송의 음성 부분을 전부 삭제하고 다수의 일본 음악저작물을 삽입하였음.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생하면서)해당 강의 영상은 홈페이지에 2021. 7. 26. 게시되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함. (공지사항으로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접수를 받으면서,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침해가 아닌 유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음. 순번 14번의 영상 부분은 침해 유형 중 “3. ▼▼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하는 행위(웹하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정이용 등으로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권리자

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더불어 일본 음악저작물을 이용 중인 음성 부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합법 시장에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함.

(순번 1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순번 15번, 21번, 23번~25번의 경우 2022. 2. 14. 현재 블로그 이용자에 의하여 비공개 글로 전환되어 있으나,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음.

(순번 19번 심의대상 게시물 및 이용약관 등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카페가 접근 금지되었는데, 해당 카페가 ▷▷▷ 이용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위반하여 ○○○ 측에서 비공개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이 경우에도 카페가 삭제 또는 폐쇄된 것이 아니고, ■■■ 내부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카페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비공개 처분을 해제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카페의 불법복제물이 다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종합하면, 게시물의 공개 상태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시정권고 요건이 충족되어 가결함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4번~51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52번~69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1,688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SW,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고요의 바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81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고요의 바다'를 453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넷플릭스에서 2021. 12. 24.에 공개한 1화~8화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넷플릭스 유료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함.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10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를 75 포인트에 판매 중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57분을 mkv파일 형식으로 제공함. 해당 저작물은 2022. 1. 12.에 개봉한 미국 영화이며, 현재 일부 극장 상영 중임.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52번~698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2번~69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5219호, 5231호(순번 1번, 13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5227호~5229호(순번 9번~11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5220호~5226호(순번 2번~8번), 제2022-5230호(순번 12번), 제2022-5232호~5916호(순번 14번~69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9쪽부터 2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2486호~4400호(순번 1번~1915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3. 2.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박성호